평창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 안 번 호 386 발의연월일 : 2025. 1. 10.

발 의 자 : 남진삼 의장

찬 성 자 : 박춘희, 김광성

김성기, 심현정

이은미, 이창열 의원

1. 주 문

○ 「지방자치법」제64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제2조에 따라 저출산문제 해결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『평창군 지역 소멸대응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한다.

○ 활동기간은 **2025년 1월 1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**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, 2007~2023년까지 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최하위로, 평창군의 인구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임.
- O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평창군의 인구는 2014년 12월말 4만3 천6백명에서 2024년 10월말 4만4백명으로, 아동인구는 10년만에 6천명에서 3천3백명으로, 연간 출생아수는 2014년 210명에서 2023년말 38명으로 각각 감소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.
- O 이러한 저출산과 인구유출은 지역의 생산성 저하와 부양 부담

증가, 교육·의료 등 생활 필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최소 인구 부족으로 이어져 지역소멸을 초래하게 됨.

O 이에 지역소멸대응 추진 체계가 실효성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현황과 대응상황,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,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 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평창군 지역소멸대응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- ○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-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
활 동계 획

1. 활동목적

- 지역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평창군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
- 저출산·고령화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 상황 점검 및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다각적인 정책방안 마련 지원

2. 구성근거

- ○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-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
3. 활동기간

○ 특위 구성결의안 의결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4. 구 성

박춘희 의원, 김광성 의원, 김성기 의원,심현정 의원, 이은미 의원, 이창열 의원

5. 운영계획

- 저출생·고령화 관련 현황 및 대응상황,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점검
-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의회 차원의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
- 중장기 지역소멸 대책 등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

【관계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- 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제2 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"본회의"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